

제 2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17 조에 의거 2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0년 3월 25일(목), 오전 10시

2. 장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 4길 45 충북대학교 융합기술원 B224(대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 2 기(2020.1.1~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 이병구(신규선임)

제 4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상근감사 : 오학진(신규선임)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7 호 의안 : 결손금 보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 542 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 368 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0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2)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년 3월 15일 오전 9시 ~ 2021년 3월 24일 오후 5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3)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및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 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20년 3월 10일

주식회사 네패스아크

대표이사 이창우 (직인생략)

위 임 장

본인은 2021년 3월 25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네패스아크의 제 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권유자 주식회사 네패스아크가 지정하는 자(현태수, 김남천, 임미희) 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 다 음 -

1. 주주번호:
2. 소유주식수: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_____ 주
4. 위임할 주식수: _____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 별 찬반 여부

주주총회 목적사항		찬성	반대
제 1 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이병구 신규선임)		
제 4 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오학진 신규선임)		
제 5 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6 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 7 호 의안	결손금 보전 승인의 건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 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항목	지시내용

주주명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일자 및 위임 시간 2021년 월 일 시

의안설명서

제 1 호 의안 : 제 2 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 447 조 및 당사 정관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해 재무제표에 관한 승인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를 승인받고자 함.

재무상태표

제 2 기 : 2020 년 12 월 31 일 현재

제 1 기 : 2019 년 12 월 31 일 현재

주식회사 네패스아크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2 기 말		제 1 기 말	
자 산				
Ⅰ. 유동자산		73,762,742,517		37,947,954,587
1. 현금및현금성자산	62,208,253,377		22,784,637,230	
2. 단기금융상품	-		5,000,000,000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520,087,447		8,128,801,564	
4. 재고자산	2,343,643,172		1,394,958,730	
5. 기타자산	1,690,758,521		639,557,063	
Ⅱ. 비유동자산		228,168,700,534		120,927,986,247
1.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73,209,546		138,772,371	
2. 유형자산	217,681,599,216		112,468,610,364	
3. 사용권자산	4,654,882,448		6,606,498,840	
4. 무형자산	1,560,348,052		342,823,807	
5. 이연법인세자산	4,098,661,272		1,371,280,865	
자 산 총 계		301,931,443,051		158,875,940,834
부 채				
Ⅰ. 유동부채		40,228,797,885		36,230,091,562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5,772,901,021		21,777,011,995	
2. 단기차입금	5,000,000,000		5,000,000,000	
3. 유동성장기차입금	7,118,666,666		4,500,000,000	

계정과목	제 2 기 말		제 1 기 말	
4. 기타부채	125,754,270		41,010,970	
5. 당기법인세부채	632,123,588		1,965,218,040	
6. 리스부채	1,579,352,340		2,946,850,557	
II. 비유동부채		113,650,321,149		91,005,968,046
1. 장기차입금및전환사채	93,665,372,370		29,389,448,262	
2.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부채	16,431,247,579		58,682,633,517	
3. 기타부채	44,159,341		40,029,747	
4. 순확정급여채무	390,114,780		472,037,787	
5. 리스부채	3,119,427,079		2,421,818,733	
부 채 총 계		153,879,119,034		127,236,059,608
자 본				
I. 자본금		5,391,218,000	3,142,857,500	
II. 기타불입자본		173,260,383,270	23,848,155,842	
III. 이익잉여금(결손금)		(30,599,277,253)	4,648,867,884	
자 본 총 계		148,902,990,185		31,639,881,226
부채 및 자본 총계		301,931,443,051		158,875,940,834

손익계산서

제 2 기 : 2020 년 01 월 01 일 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제 1 기 : 2019 년 04 월 01 일 부터 2019 년 12 월 31 일 까지

주식회사 네패스아크

(단위 : 원)

계정과목	제 2 기		제 1 기	
I. 매출액		67,844,759,237		54,718,939,371
II. 매출원가		55,484,484,235		30,272,388,694
III. 매출총이익		12,360,275,002		24,446,550,677
판매비와관리비		3,707,790,988		6,234,801,993
IV. 영업이익		8,652,484,014		18,211,748,684
V. 영업외손익		(45,244,348,131)		(11,733,383,917)
기타수익	3,085,797,374		621,741,511	
기타비용	1,718,474,433		2,200,536,512	
금융수익	130,918,781		194,688,545	
금융비용	46,742,589,853		10,349,277,461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6,591,864,117)		6,478,364,767
법인세비용(수익)		(1,442,852,830)		1,825,632,216
VII. 당기순이익(손실)		(35,149,011,287)		4,652,732,551
VIII. 기타포괄손익		(99,133,850)		(3,864,667)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99,133,850)		(3,864,667)
IX. 당기총포괄손익		(35,248,145,137)		4,648,867,884
X. 주당손익				
기본및희석주당손익		(5,207)		76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제 2 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1년 03월 25일	
제 1 기	2019년 04월 01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2020년 03월 26일	

주식회사 네패스아크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제 2 기		제 1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30,599,277,253)		4,648,867,884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4,648,867,884			
2. 당기순이익(손실)	(35,149,011,287)		4,652,732,551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99,133,850)		(3,864,667)	
II. 임의적립금이입액		35,000,000,000		-
1. 주식발행초과금 결손보전	35,000,000,000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400,722,747		4,648,867,884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 433 조의 규정에 의해 정관 일부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함.

[정관 변경(안)]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8 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이 회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 8 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이 회사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u>다만,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	비상장 사채 등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 등에 대해서는 전자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 8 조의 3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오백만주로 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⑤ ~ ⑫ <생략> ⑬ 제 8 조의 3 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 8 조의 3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u>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오백만주로 한다.</u> ② ~ ④ <현행과 동일> ⑤ <u>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u> ⑥ ~ ⑫ <현행과 동일> ⑬ <u>제 8 조의 4 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u>	우선주식의 의결권 없음과 무배당시 의결권 부여함을 명시함.
제 9 조의 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9 조의 3 (신주의 <u>동등배당</u>) ① <u>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u>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제 12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 ② <생략>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 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u>및</u>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u>3 개월을</u>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u>이사회의 결의로 3 개월내로 정한 날에</u>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 명확히 함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3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생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9 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의 2 (전환사채의 발행)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 9 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u>	전환사채를 주식 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제 28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 인이상 10 인 이내로 한다. ② <생략>	제 28 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u>이 회사의 이사는 3 인이상 10 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u> ② <현행과 동일>	사외이사 수를 명확히 함.
제 29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② <생략> <신설>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 에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②<현행과 동일> ③ <u>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u> ④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 에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 선임의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신설>	<u>제 29 조의 2 (이사 및 감사의 해임)</u> ① <u>이사 및 감사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3/4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u> ② <u>제 1 항의 감사의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수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	이사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조문 추가
제 32 조 (이사의 직무)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 (이사의 직무) <u>사장</u> ,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u>대표이사</u> 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문구 수정
제 37 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생략>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제 37 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u>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u> ② <현행과 동일>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문구 수정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칙	부칙 본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안내용) 상법 제 542 조의 4 제 2 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 2 기 정기주주총회의 제 3 호 의안 이사 선임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함

사내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성 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이병구	1946.06.06	부	대표이사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등

성 명	주된 직업	주요 약 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
이병구	(주)네패스 대표이사	- 현)네패스 대표이사 회장 - 전) LG 반도체	-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병구 사내이사 후보자>

상기 후보자(이병구)는 현재 최대주주인 네패스의 대표이사로 역임하여 경영전반에 풍부한 경험과 경륜으로 이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당사의 신규사업 추진 등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것으로 판단되어 이사회에서 추천합니다.

제 4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안내용)상법 제 542 조의 4 제 2 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 2 기 정기주주총회의 제 4 호 의안 감사 선임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함

□ 감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임원 재직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오학진	1955.05.29	부	-	이사회	없음	없음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 직업	주요약력	해당 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오학진	세미솔루션 고문	- 전) Magnachip 품질보증 담당 - 전) Hynix 반도체	-

-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오학진 감사 후보자>

상기 후보자(오학진)는 매그나칩반도체, 하이닉스에서 오랜기간 반도체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감사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사회에서 추천합니다.

제 5 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안내용)상법 제 388 조 및 당사 정관 39 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의 이사보수 한도를 다음과 같이 승인 받고자 합니다.

- (1) 전기 이사보수 한도액 : 1,200 백만원
전기 이사보수 집행액 : 723 백만원
- (2) 당기 이사보수 한도액 : 2,500 백만원

제 6 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안내용)상법 제 388 조 및 당사 정관 39 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의 감사보수 한도를 다음과 같이 승인 받고자 합니다.

- (1) 전기 감사보수 한도액 : 100 백만원
전기 감사보수 집행액 : 53 백만원
- (2) 당기 감사보수 한도액 : 100 백만원

제 7 호 :결손금 보전 승인의 건

(제안내용)상법 제 460 조 및 461 조의 2 규정에 의거 결손 보전에 대하여 승인 승인 받고자 합니다.

1) 2020 년 결손금 : 30,599,277,253 원 (개별재무제표 기준)

2) 보전재원 : 법정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충당(계정대체)

(단위 : 원)

당기말 주식발행초과금(A)	자본금(B)	자본금의 1.5 배(C)	감액가능 주식발행초과금 (A-C)
157,402,966,510	5,391,218,000	10,782,436,000	146,620,530,510

(단위 : 원)

	현재	조정	변경
자본금	5,391,218,000	-	5,391,218,000
자본잉여금	173,260,383,270	(35,000,000,000)	138,260,383,270
주식발행초과금	157,402,966,510	(35,000,000,000)	122,402,966,510
전환권대가	15,857,416,760	-	15,857,416,760
이익잉여금(결손금)	(30,599,277,253)	35,000,000,000	4,400,722,747
자본총계	148,052,324,017	-	148,052,324,017